

예산총칙

2022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15,554,623	6,466,639
일반회계	209,923,654	6,297,710
특별회계	5,630,969	168,929
기타특별회계	5,630,969	168,929
의료급여기금	320,947	9,628
주거환경개선사업	42,850	1,286
주차장	5,197,090	155,913
지하수관리	44,274	1,328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5,808	77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954,47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